

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와 대면진료관리료 안내

안녕하세요. 포인트닉스입니다.

4월4일부로 심사평가원에서

- 1)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관련 청구 방법 변경 안내
 - 2)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
- 차트에 변경된 부분 및 사용방법 안내해 드립니다.

1)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관련 청구 방법 변경 안내

●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이

종전	4월4일~		
신속항원검사 AH322 / AH324 감염예방관리 료 D6620970 신속항원검사 + 진찰료	* 신속항원검사 AH322 / AH324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불가 (차트입력X) D6620970 신속항원검사 + 진찰료 (검사는 100회까지 가능합니다.) ● 심평원 Q&A 일부 <table border="1"> <tr> <td>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 실시 횟수의 제한이 있는지?</td><td>○ 신속항원검사는 내원시 1회*를 원칙으로 하며, - 검사를 실시하는 요양기관의 의사당 1일 100회까지 가능합니다. (100회 초과 시 비급여 징수 불가)</td></tr> </table>	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 실시 횟수의 제한이 있는지?	○ 신속항원검사는 내원시 1회*를 원칙으로 하며, - 검사를 실시하는 요양기관의 의사당 1일 100회까지 가능합니다. (100회 초과 시 비급여 징수 불가)
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 실시 횟수의 제한이 있는지?	○ 신속항원검사는 내원시 1회*를 원칙으로 하며, - 검사를 실시하는 요양기관의 의사당 1일 100회까지 가능합니다. (100회 초과 시 비급여 징수 불가)		

**심평원고지내용

구분	현행 (~'22.4.3.)	변경 ('22.4.4.~)
급여 대상	△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및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, △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, △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4주 이내 혈액투석 환자로서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	<기존과 동일>
	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(의료기관형)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△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사의 진료결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등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 △ 방역패스 확인 목적으로 내원	전체 요양기관(의과) 외래 △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사의 진료결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등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 <삭 제>

2)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

● 대면진료관리료 급여 대상 및 적용수가

내용	적용수가
- 요양급여 대상 ○ (대상환자) 대면진료가 필요한 코로나19 확진환자 *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의한 가입자와 피부양자 및 「의료급여법」에 의한 수급권자 ○ (대상기관) 코로나19 확진환자에게 외래에서 대면진료를 시행하는 요양기관 ○ (적용기간)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지침」에 따른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기간	AH240 / 의원, 보건의료원 내 의과 * 대면진료관리료는 1일 1회 대면진료하는 의사당 1일 100명까지 산정가능 AH241 / 병원 등 이상
산정기준	
적용대상	코로나19 확진환자를 외래에서 대면진료한 경우
산정방법	1. ‘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’는 외래에서 1일 1회 산정 2. 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 1인당 일 100명까지 산정 3. 소아, 야간·공휴, 토요일, 심야 등 별도 가산 미적용 4. 신속항원검사(전문가용) 및 PCR 검사 당일, 동일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 대면진료 시 ‘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’는 산정 불가

● 대면진료 관련 Q & A (고시내용중 일부)

동일 요양기관에서 2인 이상의 의사(치과의사, 한의사 포함)가 동일한 날에 대면진료한 경우 ‘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’ 산정횟수는?	○ 2명 이상의 의사가 대면진료를 하더라도 ‘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’는 1일 1회 산정함 - 단, 대면진료를 하는 의사당 1일 100명까지 산정 가능함
코로나19 확진환자가 외래에서 대면진료 후 당일 입원하는 경우 청구방법은?	○ 외래 진료 후 입원하는 경우 별도 분리 없이 입원명세서로 청구
동일 요양기관에서 재택치료 당일 대면진료를 실시하거나 대면진료 후 재택치료를 시행한 경우 명세서 작성방법은?	○ 재택치료 명세서와 대면진료 명세서를 분리청구함

● 대면진료 차트 적용 안내

** 차트에 AH240 사용시 아래 그림과 같이 저장 창에 표기되는 내용입니다. (예시 의원코드사용)

[illegible]

**** 저장 창 옵션에 따른 처리 ****

진료 및 처방		옵션적용		비고
대면진료	코로나19	[v]대면진료 국비지원 []대면진료 타질환		코로나19 처방 T/외래진료센터 인쇄
대면진료	코로나19 + 타질환	1	[v]대면진료 국비지원 []대면진료 타질환	코로나19 처방 T/외래진료센터 인쇄
		2	[v]대면진료 국비지원 [v]대면진료 타질환	타질환 처방 (처방(약국) 본인부담금 발생)
대면진료	타질환	[]대면진료 국비지원 []대면진료 타질환 (비활성화)		대면진료이나 타질환만 진료 (본인부담금 발생)

**** 의료급여(보호1,2종) 환자는 (대면진료 코로나19 + 타질환) 진료시 지원이 불가능합니다.**
진료확인번호 별도승인인하여 별도 차트를 생성하여 진료입력을 진행하셔야 합니다.

● 4월 대면진료 관련 **청구관련 업데이트는 미적용**이며 별도 지침이 고시되는데로 적용하겠으니 진료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 (추후 업데이트예정 및 공지후 청구 진행하셔야 합니다.)